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2026년도 교육운영방향

2026. 2.

금 융 위 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2025년도 교육실적	2
III . 2026년도 교육운영방향	4
1. AML 교육운영체계 고도화	5
2.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역량 제고	6
3. 교육과정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	7
IV . 향후 계획	8

I. 추진배경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은 금융거래를 매개로 한 범죄피해 확산 위험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핵심 조치
 - 특히, 캄보디아 사태 등 초국가 범죄, 도박·마약 등 중대 민생침해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회사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 확대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의 내실 있는 교육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교육운영방향을 수립·발표하고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관리
 -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은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에 대한 AML/CFT 교육을 의무화(\$5)
 - * 금융회사의 "지속적 임직원 교육"을 AML/CFT 정책의 필수사항으로 규정(FATF Recommendation 18)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및 관계기관 교육업무 체계 >

구분	관련 역할
금융정보분석원	교육운영방향 수립, 교육 관련 평가지침 마련
의무이행기관 (금융회사 등)	기관별 교육계획 수립, 자체/위탁교육 실시
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교육실적·수요 점검, 업권 특화 교육 운영
민간교육기관 (업권별 연수원 등)	집합/사이버교육 제공, 자격시험 실시 및 관련 과정 운영
검사수탁기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등)	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점검을 통해 관리

- 국내·외 자금세탁 위험의 고도화, AML/CFT 규제 변화, 업권별 업무특성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 자금세탁방지 교육제도는 최신 자금세탁 동향의 지속적인 현행화 등을 통해, 단순 이수 중심에서 현장 실무 역량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

➡ '25년 교육실적·제도이행평가 결과·교육정책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26년도 교육운영방향 검토

II. 2025년도 교육실적

- ◇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교육실적은 전년에 이어 증가 추세 지속
 - 교육실적이 양적으로 충분히 증가한 만큼, 실제적인 AML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

1. 교육 이수시간

- (직위별) '25년 금융권 평균 AML 교육 이수시간은 약 9.1시간으로, 교육 권고시간(평균 6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교육실적을 기록
 - 임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평균 교육시간은 약 9.4시간으로, 권고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 비율도 약 95%를 상회
 - 다만 이사회와 경영진의 경우 직원 대비 낮은 실적을 보여, 임원 및 책임자급의 AML 책무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를 독려할 필요

< 이사회·경영진·직원 교육 실적(시간 / 권고시간 이상 이수한 비율) >

구분	이사회	경영진	직원	소임·직원
'24년	4.3 / 58.1%	7.5 / 87.2%	9.2 / 94.1%	8.8 / 91.0%
'25년	5.6 / 74.2%	8.1 / 92.1%	9.4 / 95.5%	9.1 / 93.6%

- (업권별) 은행·가상자산 등은 높은 교육실적(평균 10시간 이상)을 기록한 반면, 벤처투자·온라인투자 등 일부 업권은 교육실적이 저조
 - 업무 구조와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가 제한적임에 따라 교육 참여 및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2. 교육 수요

- 주요 민간교육전문기관* 교육 이수자 수는 사이버 강의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12% 증가(5.4만 명 → 6만 명)

*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 세부 과정별로는 가상자산, 글로벌 금융제재 등 최신 경향에 부합하는 사례·실무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
- 특히, 개인금융·기업금융 등 직무별 자금세탁방지교육 이수자 수가 급증하는 등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주요 과정별 이수자 추이(명) >

구분	AML 최신 사례	STR 실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사례 연구	글로벌 금융제재와 CFT/WMD	개인금융 담당자를 위한 AML	기업금융 담당자를 위한 AML
'24년	1,983	1,600	211	104	376	370
'25년	4,735 (+138.8%)	2,870 (+79.4%)	346 (+64.0%)	126 (+21.2%)	1,075 (+185.9%)	577 (+55.9%)

3. 전문가 양성

- AML 전문성에 대한 시장 인식 및 수요 확대 등으로 연간 AML 자격증 취득자 수는 꾸준히 1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
- 금융회사에서도 AML 전문성을 필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자격증 보유인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

< AML 자격증별 취득자 추이(명) >

구분	CAMS	TPAC	AML 핵심요원(기초)	AML 핵심요원(전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합계
'24년	529	1,631	6,878	784	766	10,588
'25년	577	1,133	6,232	687	1,316	9,945

- TPAC*(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시행 이후 총 응시자 5,793명 대비 합격자(3등급 이상)는 2,764명으로 누적 합격률은 47.7%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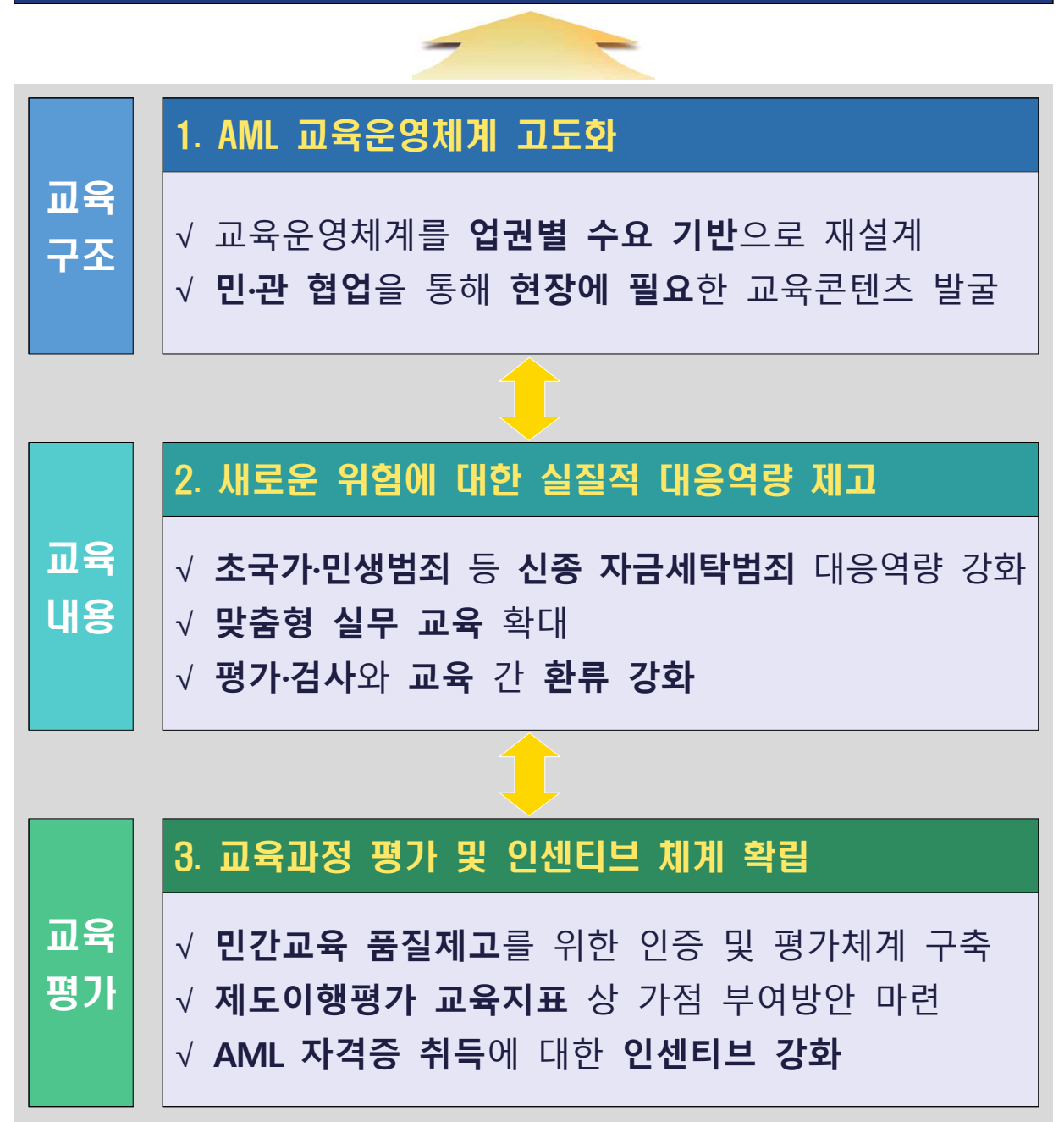
* 해외민간자격(CAMS)의 높은 취득비용·국내법규 미반영, 국내민간자격의 형식적 평가(합격률 90% 이상) 등 한계를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의 국내전문자격 도입('24년)

- 상위권 합격률(1등급 이상)은 약 2% 수준으로, TPAC 고득점을 통해 우수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보유 여부 입증 가능

Ⅲ. 2026년도 교육운영방향

- ◆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과 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가 선제적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 교육의 질과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평가·인센티브를 통해 교육-제도이행의 선순환 구조 마련

“금융회사의 AML/CFT 실질적 대응역량 강화”



1. AML 교육운영체계 고도화

- ◇ 자금세탁 위험의 고도화와 업무 환경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교육만으로는 업권별 위험 특성과 현장 실무 전반을 충분히 포괄하는 데 한계
 - ➔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업권별 교육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

① 현장 수요 기반 「AML 교육운영 로드맵」 수립

- AML 교육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上)
 - 업권·직무별 교육실태 및 수요를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조사
 - *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교육참여자 인식, 현장 개선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도출 가능
 -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과 실무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제 도출, 이를 종합하여 수요자 관점으로 교육운영체계 재설계 추진

② 민·관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 발굴

- 교육(민간교육기관)-제도이행(협회·금융사)-검사(FIU·검사수탁기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교육 협력체계 구축('26.下)
 - 현업 활용도, 제도 정합성, 교육 효과성을 기준으로 교육 필요분야를 선정하고, 검사·평가 취약부문을 반영하여 교육콘텐츠 공동 기획

< 기관별 역할 구분 >

금융정보분석원	제도 및 위험기반접근(RBA) 체계와의 정합성 검증 및 총괄 조정
민간교육기관	실제 운영 가능하고 효과성 높은 사례 중심 교육과정 설계
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검사수탁기관	검사·제재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요 취약점·지적사례 공유

2.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실질적 대응역량 제고

- ◇ 최근 금융범죄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적시에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실무 중심 AML 역량의 중요성이 확대
 - ➔ 시급하거나 취약한 영역의 교육을 보강하고, 평가·검사와의 환류를 강화하여 교육 이수가 실질적인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

① 신종 자금세탁범죄 대응 역량 강화

- 캄보디아 사태 등 국제 제재 모니터링에 따른 선제적 자금동결,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사례* 중심 교육 추진**
 - * 해외송금·외환거래, 가상자산 거래 등 관련 초국경 자금세탁 리스크, 중대 민생침해 범죄 및 초국가범죄 관련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제 금융제재 관련 위험평가체계 구축 등
 - ** 집합교육 시범 운영(금융연수원, '26.上) → 원격교육 개발 추진('26.下)

② 맞춤형 실무 교육 확대

- 교육실적이 저조한 벤처투자 등 업권의 AML 인식 강화를 위해 업권 특화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금융연수원, '26.下)
 - * 투자구조를 악용한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 리스크, 국내외 제재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반영
- 금융회사 등의 신규 자금세탁유형 이해도 제고를 통한 의심거래보고 품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 배포('26.上)

③ 평가·검사 - 교육 간 환류 강화

- (평가) '25년 이행수준이 낮은 지표를 금융회사 교육계획 수립 시 필수교육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검사 시 교육 이행여부 점검

< 제도이행평가 미흡분야 및 중점 점검대상 교육과목 >

이사회 교육실적 부족	STR 기준 관리 미흡	독립적 감사, 취약점 점검 미흡
↓	↓	↓
이사회 교육(6시간 이상)	STR 교육	내부통제 교육

- (검사) 수탁기관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원 교육 실시('26.上), 제재수준 일관성 제고를 위해 검사 매뉴얼·제재 사례집 발간('26년 중)

3. 교육과정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

- ◇ AML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교육의 질과 전문성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는 교육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
 - ➔ 고품질 교육 이수와 전문성 강화 노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교육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

1] 민간교육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형식적 수강, 부실 교육을 방지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26.下)
 - 내실 있는 평가, 높은 실무 활용도 등 우수교육으로 인증받은 과정 이수 시 임직원 교육실적 가점 부여 추진(예, 교육시간 120% 인정)
- AML 자격증·전문교육과정 전문성 평가 실시("26.下)
 - 신규 및 기존 인정과정 대상으로 교육자문위원회 주관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전문성 관리 및 평가점수 합리성 제고

< 상세 절차(안) >

- ① AML 우수교육인증/전문성평가 신청 공고(FIU 홈페이지, ~6월) → ② 자기평가자료 제출(~7월) → ③ 적정성 검토(8월) → ④ 교육자문위 개최(9월) → ⑤ 인증/평가결과 및 점수 확정(~10월)

2] 제도이행평가 교육지표 개선

- 책임자급(보고책임자·감사반장) AML 자격증 보유에 대한 가점 부여("26.上)
 - STR 기준 관리, 독립적 감사 등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책무성 강화 및 전문가 양성 노력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제공

3] TPAC 자격제도 인센티브 강화

- AML 인사이트 교류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기회 마련("26.上)
 - TPAC 상위등급자(1등급 이상) 대상 전문가 포럼 개최(금융연수원) 및 정례화를 통해 AML 리더 커뮤니티 형성 및 전문성 유지·공유 지원
- 사회적 수요를 보아가며 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 추진("27년~)

IV. 향후 계획

- 「금융회사·업권별 협회 등 - 민간교육전문기관 - 검사수탁기관 - FIU」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추진
 - (금융회사 등) 교육 권고시간 등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 수립·이행
 - (업권별 협회 등) 각 업권 교육실적 점검 및 교육이수 독려, 업권별 특화 교육 운영,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FIU와 진행상황 수시 공유
 - (민간교육전문기관) 사례·실무 중심 업권·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지속 개발·공급, 자격제도 유지·관리
 - (검사수탁기관) 검사원 대상 검사실무 교육 이수, 검사 시 이사회 교육실적 등 제도이행 취약부문 중점 점검

< 세부과제별 협조사항 >

세부과제	주체	협조사항	일정
1-① 「AML 교육운영 로드맵」 수립	FIU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 수립	3분기
1-② 민·관 협업체계 구축	FIU, 협회, 검사수탁기관, 교육기관 등	-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공동기획	3·4분기
2-① 신종 자금세탁범죄 대응역량 강화	금융연수원	- 초국가범죄 관련 실무역량 강화 과정 개발·운영	2분기~
2-②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금융연수원	- 벤처투자업 특화과정 신설·운영	3분기~
	FIU	-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배포	1분기
2-③ 평가·검사 환류	금융회사, 협회	- 기관별 교육계획 수립 시 필수교육 반영	상시
	금융연수원 등	- 필수교육 강화, 검사원 교육 운영·관리	상시
	검사수탁기관	- 검사원 교육 수강, 검사시 교육여부 점검	상시
	FIU	- 검사 매뉴얼 및 제재 사례집 발간	~4분기
3-① 민간교육 품질관리 체계 구축	금융연수원 등	- 교육과정 인증 및 전문성 평가 신청	~2분기
	FIU	-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 자격증·전문 교육과정 전문성 평가 실시	3분기~
3-② 제도이행평가 교육 지표 개선	FIU	- 전문가 양성 지표 인센티브 부여	1분기~
3-③ TPAC 자격제도 인센티브 강화	금융연수원	- AML 전문가 포럼 개최	1분기

<p>AML (자금세탁방지) : Anti-Money Laundering</p>	<p>불법재산의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방지</p>
<p>CFT (테러자금조달금지) :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p>	<p>테러자금조달 범죄화 및 관련단체와의 거래 금지</p>
<p>STR (의심거래보고)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p>	<p>특정 자금이 범죄 활동의 수익이거나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p>
<p>CTR (고액현금거래보고) : Currency Transaction Report</p>	<p>일정금액(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p>
<p>CDD (고객확인 의무) : Customer Due Diligence</p>	<p>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p>
<p>EDD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 Enhanced Due Diligence</p>	<p>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 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p>
<p>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Financial Action Task Force</p>	<p>'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p>